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78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임호선·정준호·허 영

임미애 · 오세희 · 김재원

복기왕 • 이학영 • 김영진

정일영 · 전진숙 · 이워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 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500만 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포전거래는 불확실한 수확량, 작물 보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

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제90조제3항제3호의2삭제).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90조제3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과태료) ① · ② (생	제9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략)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u><</u> 삭 제>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			
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			
<u>도인</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